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이관되는 사항을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6)

- 1)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신청방법, 인증결과 통지, 인증서 재발급 등 관련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

나.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7)

- 1)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 이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적용
- 2)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인증 재신청 절차를 규정

다.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조문을 삭제 및 변경(안 제8조, 제19조, 제29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의 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 사본
3.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간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직무발명보상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인증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의6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6제1항(중전의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선정된”을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을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신청, 인증 심의”로 한다.

4. 그 밖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신청 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7(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인증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024년 8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기업은 제6조의 6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중 “본문”을 “단서 및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6,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8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개별기준의 ‘다. 항목’란과 ‘아 항목’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8.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기업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	
		업종 (산업분류코드: □□□□□)	주 생산품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개인	종업원 수	
		회사 대표번호	회사 팩스번호	
		주소 □□□□□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Fax	
		부서명	직위	
	대표자	e-mail	전화번호	
	신청구분	[] 일반 신청 [] 재인증신청 [] 재심의신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8. 7.>

제 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특 허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Certificate of Excellent Enterprise in Employee Invention Promotion

Name of Company:

Representative:

Certificate Number:

Valid perio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is
an Excellent Enterprise in Employee Invention Promo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

. . .

(Signature)

(Commissioner name)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4.8.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자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발급일자)	대표연락처
		주소 □□□□□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Fax
		부서명	직위
재발급 신청	재발급 사유 : [] 인증서 분실 [] 인증서 훼손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분실·훼손 사유		
	기재사항 변경 [] 업체명 [] 대표자명 [] 주소 [] 기타 내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1부 2. 인증서가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 그 인증서 3. 인증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삭제>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 사본

3.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간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직무발명보상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신청 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인증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⑥ -----
---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⑦ ----- 제6항-----
-----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신청, 인증 심의 -----

-----.

제6조의7(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인증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024년 8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기업은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 단서 및 제13조제2항-----

-----.

<삭 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 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삭 제>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
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
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
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
항

④ 특허청은 제3항에 따라 수
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
사업 등) ① 법 제20조의3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활성
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
구용역

<삭 제>

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 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

<삭 제>

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

<삭 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시설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 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 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
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
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
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9(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

제29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한 업무</u> <u>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u> <u>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u> <u>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u> <u>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u> <u>한 업무</u> <u>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u> <u>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u> <u>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u> <u>고시해야 한다.</u>	<u><삭 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20